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근거 법률 이관〉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94호)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95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현황 및 도입 배경	8
3. 개정안의 검토	12

I. 제안경위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5. 7. 24.

다. 회 부 일: 2025. 7. 25.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5. 7. 24.

다. 회 부 일: 2025.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안)

현행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 및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 관리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

그럼과는 전반적인 구성 체계에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정비 일원화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삭제).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안)

「출입국관리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 및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 관리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는 전반적인 구성 체계에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

이에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으로 이관·정비 일원화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2건의 개정안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임.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삭 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삭 제>

제41조(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삭 제>

<u>한다)을 둘 수 있다.</u> <u>② 사회통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u> <u>1. 외국인 및 고용주 등의 법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u> <u>2.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체류 지원</u> <u>3. 영주자격 및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u> <u>4.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u> <u>③ 사회통합위원회는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u> <u>④ 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자치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u>	
---	--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

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신 설>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의4(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회통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한외국인 및 고용주 등의 법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2.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체류 지원

3. 영주자격 및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u>사회통합위원회는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u> ④ <u>사회통합위원회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자치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u>
--	---

2.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현황 및 도입 배경

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고자 실시하는 사회통합 교육으로,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체류허가 발급 시 가점부여나 영주·국적 신청 시 시험 면제 등의 이민정책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¹⁾.

프로그램 교육 과정으로는 정규 교육, 시민 교육, 이민자멘토 교육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과정인 정규 교육의 경우에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총 415시간, 0단계~4단계), 한국사회 이해과정(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법 등 총 100시간, 5단계)으로 구성되어 있음²⁾.

1) 「출입국관리법」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2) 정규 교육은 가장 대표적 형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고, 이 외에도 시민 교육, 지자체연계 프로그램 교육, 이민자 멘토교육 등의 유형과 최근 특별 수요에 따라 실시 중인 산업 현장 방문형, 숙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정규 교육 구성]

구분 \ 교육명	한국어와 한국문화(415시간)					한국사회 이해(100시간)	
단 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영주용)	심화(귀화용)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 자료: 법무부(재구성)

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도입 배경 및 주요 연혁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8년 법무부 훈령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³⁾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던 것을, 2011년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률⁴⁾로 상향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또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지역학습관 운영(2012. 6월),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 연계(2015. 9월), 대학교 연계 과정 도입(2016. 1월), 귀화 필기시험의 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체(2018. 3월) 및 숙련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시(2025. 2월) 등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보완·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련기능인력 특별반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3)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03.12. 법무부훈령 제612호

4) [의안번호 181435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12-29 본회의 의결

[사회통합 프로그램 주요 연혁]

시 기	주요 내용	세부 사항
'12. 6월	지역학습관 운영 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없는 지자체, 사업장, 단체 등의 일정 장소를 지역학습관으로 지정하고 관할 거점운영기관이 강사 및 학사관리 지원
'15. 9월	한국어능력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평가로 인정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도 성적(등급)별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각 교육 단계에 바로 참여 가능하도록 평가 연계
'16. 1월	대학학부 연계과정 도입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교의 교양 또는 필수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해당 대학 과정 이수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으로 인정
'18. 3월	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귀화필기시험(20문항)을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45문항)로 대체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 귀화 신청자의 기본소양 검증 평가 연계
'21. 8월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 개편	5단계 교재 교육시간을 확대하고(70→90시간) 사회참여형 교육(10시간)을 추가하여 총 100시간으로 개편
'23. 5월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시	조선업체에 근무하는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초(15시간) 및 초급 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총 100시간) 교육 실시
'25. 2월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시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비자 전환의 필수 요건인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력(E9, E10, H2) 및 숙련기능인력의 배우자(F-3)를 대상으로 0~2단계(215시간) 교육을 제공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운영

* 자료: 법무부(재구성)

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살펴보면, 2021년 43,552명, 2022년 42,163명으로 4만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58,028명, 2024년 70,949명, 2025년 90,180명으로 대폭 상승 중이며, 2026년의 경우에는 5월 기준 58,022명에 달하여 연간 9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5월
참여자 수	36,620	43,552	42,163	58,028	70,949	90,180	58,022

* 자료: 법무부(2026.6월 기준)

또한,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대학, 민간단체 등 2025년 7월 기준 전국에 총 384개소를 지정하고 있고, 운영기관의 종류로는 이민자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 운영기관’과 일반 운영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점 운영기관’이 있으며, 거점운영기관 중에는 평가관리 등의 전국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거점운영기관’ 1개소(한국이민재단)가 있음.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단위: 개)

유 형	거점 운영기관 ^{표1)}	일반 운영기관 ^{표2)}
대학교	33	7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78
지방자치단체	4	21
사회복지관	-	20
기타 단체 ^{표3)}	8	145
합 계	45	339

* 자료: 법무부(재구성, 2025.7월 기준)

표1) 거점운영기관 : 관할 거점 내 운영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조정·운영, 학사 및 강사 관리 총괄

표2) 일반운영기관 : 교육과정 운영,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

표3)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예시]

관할 출입국기관	거점 구역	거점 기관명
서울	중앙	(재)한국이민재단
	서울1	(사)몽골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서울2	중앙대학교
	서울3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4	숙명여자대학교
인천	인천1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2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3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기10	(사) 경기글로벌센터
수원	경기1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2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3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경기4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제주	제주1	제주이주민센터

* 자료: 법무부(재구성, 2025.7월 기준)

3. 개정안의 검토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3개의 조를 통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과 경비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사증발급과 체류허가에서의 우대, 그리고 사회통합 자원 봉사위원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⁵⁾.

한편,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제11조 및 제12조 등에서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의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이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과 대한민

5) 「출입국관리법」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41조(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본 보고서 본문 3p.~5p. 현행조문표 참조 제42조 ~ 제45조 삭제 <1999. 2. 5.>

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등 재한외국인과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⁶⁾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관련된 명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음.

2건의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 관리나 국경관리 위주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의 처우와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련된 조항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함으로써 법률상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보다 통일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임.

먼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이 목적 규정에서 “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⁷⁾,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위해 사증발급, 체류관련 각종 허가와 연계된 혜택을 부여하고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7) 「출입국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있으므로, 여기에 관련 근거를 두는 것이 목적 및 구성 체계에 부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 처우에 관한 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적인 성격⁸⁾을 갖고 있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근거 및 운영기관 지정 등과 같은 집행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과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이 경우에도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특별기여자의 처우,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 지정과 같은 집행적 성격의 조항이 존재하고 있고⁹⁾,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 업무 범위 지정 및 경비 지원¹⁰⁾이나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운영¹¹⁾와 같이

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각 주 6)을 참조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1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연구·자문·정보교환
2.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3.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지원
4.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5.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정기간행물·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보급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조직 구성이나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유사 사례도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음으로, 과거 법률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08년 사회통합 프로그램도입의 근거로 제정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의 목적에는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 구현”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시행하고 그 운영기관을 지정·관리”하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어, 동 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임¹²⁾¹³⁾.

마지막으로, 실무상 법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하거나 제도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하여 현행 법률의 정비가 시급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개정안의 입법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및 「난민법」 등 관련 법령¹⁴⁾들의 전면적 재정비와 같은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사회

④ ~ ⑤ (생략).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이하 생략)

12) 참고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최초로 법정화했던 2011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당시의 심사 관련 자료(검토보고서, 회의록 등)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근거를 규정하게 되는 유의미한 연혁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

13) “「출입국관리법」 법령체계 분석(제1호, 2025 .6., 국회사무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의 이관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근거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14)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통합 프로그램 근거 이관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 차원의 전반적인 실
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7

5.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의2.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
상을 득점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③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4. (생 략)

「난민법」시행령 제14조(사회적응교육)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
회적응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